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71

발의연월일: 2022. 8. 16.

발 의 자:이만희·강대식·박성민

성일종 • 양금희 • 윤한홍

이명수 · 정경희 · 조명희

최재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시·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도 역시 일부 사항(시·군·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기간·물량·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를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부명세"를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u>의 공개)</u> 시·도지사(특별자치	<u>등 공개)</u>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	<u>세</u>
금의 <u>세부명세</u> 를 매년 해당 시	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	<u>사업에 관한 정보</u>
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